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14161
등록일자	2015.6.29.
결재일자	2015.6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청소운영팀장	청소행정과장	환경도시국장
권기업	권현욱	오문식	06/29 오제성
협 조			

생활폐기물 수집 · 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



서 대 문 구
청소행정과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논란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대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청소서비스 질을 혁신하고자 함

1

추진배경

-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“독립채산제” (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업체 운영비 총당)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 등과 관련 있어 폐기권고
 - (2013.2.1. 환경부)
-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 않고 대행업체의 대행비용 사용은 지방재정법 위반
 - 지방재정법 제15조(수입의 직접사용금지) 및 제34조(예산총계주의 원칙)

2

수집·운반 대행체계 현황

- 현황
 - 대행업체 선정의 장기적인 수의계약
 -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운영비 총당하는 “독립채산제” 방식
- 문제점
 - 대행대가 지불방법 “독립채산제”의 지방재정법령 위반
 - 수수료 처리 회계투명성 저하,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정운영 필요
 - 장기간 수의계약 및 영업권 보장에 따른 특혜시비

- 대행대가 지불방법으로 독립채산제의 합법성 시비
-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열악
 -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직영 대비 상대적 저임금으로 불만요인 상존 (직영미화원의 54% 수준)

3

추진방향

-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예산편입
- 독립채산제 개선 등 청소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→ 실적제 전환
- 청소대행방식 대안 마련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비 등 원가 계산 용역 실시
- 대행업체간 공개경쟁체제 도입 → 장기 수의계약 관행 개선
-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·복지수준 개선

4

세부추진계획

- 종량제 수수료 가격인상
 - 인상시기 : 2015. 7. 1.
 - 생활폐기물 수수료

구분	현재수수료	2015. 7. 1(1단계 인상)	2017. 7. 1(2단계 인상)
일반쓰레기(20ℓ)	340원	440원	490원
음식물쓰레기(2ℓ)	40원	140원	200원

- 종량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상액 세입조치
- 2단계로 구분 인상으로 주민부담 최소화
- 2016년 종량제수수료 세입·세출 예산편성으로 수수료 수입관리 투명성 확보

□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

- 용역기간 : 2015. 3. 23. ~ 7. 20.
- 추진배경
 - 대행대가 지불방법의 변경(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경)
 -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(톤당 단가제)
 - 공개경쟁입찰 도입방안 및 평가기준 마련으로 우수한 대행업체선정
- 주요 과업 내용
 -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·운반 처리비
 - 종량제 규격봉투 효율적 관리체계 방안
- 용역결과물 제출 : 2015. 7. 20(7월초 완료)
- 공개경쟁입찰 실적제의 기초자료 활용

□ 대행업체간 경쟁체제 도입(공개경쟁 입찰)

- 도입시기 : 2016. 1. 1.예정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(실적제)
- 업무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전 및 청소서비스질 유지를 위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(최대 9년)

4

향후일정(안)

- 종량제수수료 인상 : 2015. 7. 1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비 원가산정 완료 : 2015. 7월 중
- 공개경쟁 입찰 도입 방침수립 : 2015. 8월 이전
-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: 2015. 10월 이전
- 공개경쟁 입찰 실시 : 2015. 11월 중
- 실적제(톤당단가제)시행 : 2016. 1. 1.(예정). 끝.